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 안내

- 정부에서는 WTO의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사법 개정(2011. 5. 30)을 통하여 UIA권고 기준에 의한 교육, 실무수련, 자격검증, 자격등록, 갱신등록, 계속교육을 근간으로 한 『건축사자격제도』를 도입하였고, 건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과 등 주요한 건축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건축사등록원』, 『건축사교육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계 발전을 위한 건축제도의 개선 및 정책 개발, 건축정보 제공,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협회 정관과 회원신고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면 건축사사무소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였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건축사는 건축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 건축계가 하나 되는 건축문화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종류

정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협회에 입회한 자
준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사와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

■ 회원혜택

- 건축전문지 월간 <건축사>, 건축계 정례지 격주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제공
- 건축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협회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
- 건축관련 법령자료 제공
- ARCA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 기회 부여
- 회원복지서비스 혜택
- KIRA NEWS 제공
- 건축관계 법령 질의·상담 및 대정부 건의
- 해외의 각종 건축관련 기술정보 및 국제행사 참여 기회 제공
- 건축사 실무교육 정보 제공
- 정부포상 추천

■ 정회원 가입절차

- 건축사 자격등록 후, 해당 시·도건축사협회 신고서류 제출 및 회비납부
- 제출서류 : 정회원 신고서, 건축사 자격등록증(전자문서), 반명함판사진 2장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추가 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 회비안내

1. 회비의 종류 및 금액

구분	납부내용	납부처
정회원	· 입회비 : 300만 원(입회 시 1회) · 월정회비 : 3만 원(매월) · 시·도건축사회 회비(입회비 및 월정회비) : 해당 시·도건축사회 회칙에 따름	시·도건축사회
준회원	· 입회비 : 50만 원(가입시 1회) · 연회비 : 6만 원	

2. 회비 사용처

- 입회비 및 정회원(준회원) 회비 : 건축문화발전 및 회원권익증진, 협회조직관리 운영자금 등

■ 본협회 및 시·도 건축사회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분	전화번호	FAX번호
본협회	(02)3415-6800	(02)3415-6855	대 전	(042)485-2813~5	(042)485-2818	충 남	(041)338-4088	(041)338-4188
서 울	(02)581-5715~8	(02)523-2284	울 산	(052)274-8836	(052)268-8837	전 북	(063)251-6040	(063)251-6048
부 산	(051)633~6677	(051)634-2966	세 종	(044)862-6336	(044)862-6226	전 남	(061)285-7563~4	(061)285-7567
대 구	(053)753-8980	(053)756-9049	경 기	(031)247-6129~30	(031)242-7072	경 북	(054)859-8170	(054)859-8175
인 천	(032)437-3381~4	(032)437-3385	강 원	(033)254-2442	(033)255-2083	경 남	(055)246-4530	(055)245-4530
광 주	(062)521-0025~6	(062)528-0026	충 북	(043)223-3084~6	(043)223-3089	세 주	(064)752-3248	(064)756-3248

* 회원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도건축사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등록실적팀(☎ 02-3415-685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진국형 한국 건축정책과 제도, 한국 공공건축의 격 낮춘다

Underdeveloped Korean architectural policies and systems lower the class of Korean public architecture

글. 홍성용
Hong, Sungyong
본지 편집국장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자하 하디드.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이하 DDP)는 담당 공무원들에게끔 끔찍한 프로젝트였다. 이들에게 동대문 DDP의 건축적 가치를 질문하면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문화와 기술적 성과인 건축가치를 지닌 건축으로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받은, 건물 이 아닌 '건축'이다.

해외 유수의 문화적 가치지향성 행사나 주체들이 한국에서 행사장으로 선택하는 곳이 DDP다. 세계 패션의 선두주자인 샤넬이나 루이뷔통 같은 브랜드에서부터 세계적인 디자이너나 작가들이 자신들의 전시나 행사를 하고픈 장소로 DDP를 선택한다. 이제는 논란의 여지없이 연간 방문객을 2,000만 명 이상 모으는 최고의 건축으로, 서울을 상징하는 아이콘의 하나가 되었다. 그런 건축이 왜 공무원들에게는 스트레스성 질병을 안겨줄 만큼의 과정을 겪었을까?

이쯤에서 잠시 다른 공공건축 이야기를 해보자. 최근 공공건축 프로젝트 당선 이 되어서 서울시 기술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공공건축이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 여실히 느끼고 있다. 건축과 건물을 구분하지 못하고, 설계와 시공의 지향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후진적 사고로 만들어진 건축정책과 제도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바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제87조 제5항 관련)이 그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건축설계와 건설시공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채로 몽둥이로 살벌한 별점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건축은 매력적인 성과물, 즉 완성도 있는 미래의 문화재적 잠재성을 내포하는 건축이다. 이런 건축을 일개 건물로 추락시키는 역할을 이 별점 관리 기준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 가장 어이없는 기준이 바로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건축사에 게 수량 및 공사비가 잘못됐다고 별

점을 주는 규정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다목 5) 가) · 나) · 다) >

5. 별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점
5)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가)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나)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 다) 토공사·배수공사 등 공사 종류별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총공사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공사 종류로 한정한다)	2 1 0.5

왜 잘못되었냐고? 완성도 높은 건축을 설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디테일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이런 요소들이 쌓이면 공사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설계공모를 심사하는 심사위원들 대부분은 국내 건축공사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눈으로 보이는 '건축적 가치'에 집중한다.

이 최악의 규정이 건축사들을 옥죄고 망나니의 칼날처럼 건축을 훼손해서 건축이 아닌 '건물'로 추락시킨다. 실무 공무원들에게 굳이 완성도 높은 건축일 필요가 없다. 그냥 필요에 맞춘 건물이면 문제없다. 필요 없어지면 해체하고, 예산을 만들어서 다시 저렴하게 건물을 지으면 되기 때문이다. 당장 이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더구나 국내 건축사들에게 이 규정은 역차별의 정수다.

2006년에 예상 공사비가 1,593억 원이었던 DDP는 2011년 5,094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진행되었다. 자하 하디드는 별점을 받지 않았고, DDP는 그의 대표작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무수히 반복된 감사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 건축직 공무원에게 '건축'을 요구할 수 있는가. 그들은 '건물'을 만들면 이런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한민국 관료와 정치인들은 이런 사례를 보고서도 문제의식이 없는가?

